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16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김준혁ㆍ이수진ㆍ권칠승

이기헌・조 국・부승찬

모경종 · 강경숙 · 백승아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영화를 관람하려고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영화에 대하여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

가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영화상영관입장권·영화관람권 또는 할인권·교 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 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3조의 11 신설).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12 신설).
-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입장권등마다 다르다는 점과 입장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 · 추징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호 및 제96조의3 신설).
- 라.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 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및 제96조의3 신설).
- 마. 제3조의11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11 및 제3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1(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영화상영관입장권·영화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 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 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제3조의1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 득하게 한 자

제95조의2 및 제9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 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의3(몰수·추징) ① 제94조제1호 및 제95조의2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97조 본문 중 "제96조까지"를 "제96조까지(제94조제1호 및 제95조의 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8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조의11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 2.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11(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화상영관입장권・영화관람
	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
	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
	를 방해하는 행위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
	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
	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
	<u>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u>
	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u>행위</u>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신 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u>. ~ <u>7</u>. (생 략)

<신 설>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 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 선하는 행위

제3조의1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제95조의2(벌칙) 제3조의11제3호

<신 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 3조부터 <u>제96조까지</u> 및 제96조 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96조의3(몰수·추징) ① 제94조 제1호 및 제95조의2에 따른 재 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을 몰수하 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 額)을 추징한다. 제97조(양벌규정) --------- 제96조까지(제94조제1호 및 제95조의2는 제외한다) ---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1의2. ~ 9. (생략)

③ (생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_____
- ----.
- 1. 제3조의11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 2. 제3조의11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 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취득하게 한 자
- 3. ~ <u>12</u>. (현행 제1호의2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